의안번호	제 320 호			
의 결	년 월 일			
연 월 일	(제 회)			

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

발 의 자	임영은 의원 등 6인
발의연월일	2019년 11월 19일

#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

의안 번호 **320**  발의연월일: 2019년 11월 19일

발 의 자 : 임영은「빢우양「빢문희」미상식 🗆

이상정[하유정 의원(6인)

#### 1. 제안 이유

○ 「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도내 지역별 특화작목의 연구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· 농촌의 경제적 발전 에 기여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 내용

-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□시행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- 에 5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 계획의 수립과 시행(안 제4조)
-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천계획의 수립과 시행(안 제5조)
- 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·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의 실시(안 제6조)
-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특화작목육성위 원회의 설치(안 제7조)

3. 조례안 : 붙 임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 임

5. 예산조치 : 붙 임

6. 관련부서 협의 :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와 협의

**7. 입법예고** : 2019.11.8. ~ 2019.11.17.(10일간, 특이의견 없음)

## 충청북도조례 제 호

#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도내 지역별 특화작목의 연구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·농촌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지역특화작목"이란 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과 사회적, 지리적 여건에 특화되어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.
- 2. "지역특화작목산업"이란 지역특화작목을 생산하거나 가공 유통대판매하는 등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 공하는 산업을 말한다.
- 3. "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"이란 「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"시행령"이라 한다) 제2 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.
- 4. "사업화"란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대상 또는 유통대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.
- 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 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다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다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대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4조(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도지사는 「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 법"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(이하 " 발전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리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도지사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·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  - ③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지역특화작목 육성계획
  - 2.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·보급 및 사업화 계획
  - 3.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인력 및 시설 투자계획
  - 4. 지역특화작목 농가 등 지역특화작목산업을 영위하는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현황분석
  - 5.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계획
  - 6.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- ④ 도지사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확정된 발전계획을 통보받거나 발전계획을 변경했을 때에는 시장·군수에게 알려야 한다.
  - ⑤ 도지사는 발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의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실천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

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제4조 발전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실천계획(이하 "실천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 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도지사는 실천계획이 수립되면 시장·군수에게 알려야 한다.
-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지역특화작목 사업추진 현황
- 2. 추진사업별 추진체계
- 3. 연도별 사업추진계획
- 4. 연도별 추진사업 예산
- 5.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 및 내용
- 6.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④ 제3항제5호에 따른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에는 해당 사업의 정성적(定性的) 목표와 측정 가능한 정량적(定量的)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.
- ⑤ 도지사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실천계획을 매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.
- ⑥ 제5항에 따라 제출되는 전년도 실천계획의 추진 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예산집행 실적
- 2. 정성적·정량적 목표의 달성도
- 3. 전년도 추진사업의 대표성과

제6조(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지원) ① 도지

- 사는 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·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②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기술이전·사업화 및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7조(특화작목육성위원회의 설치)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특화작목육성위원회(이하 "위원회"이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.
  - 1. 제4조에 따른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 - 2. 제5조에 따른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 - 3.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계획의 중복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·조정에 관항 사항
  - 4.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성과의 검토· 환류에 관한 사항
  - 5.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-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며, 간사는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장으로 한다.
  - ⑤ 당연직 위원으로는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국장이 되고 위촉 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

- 1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
- 2. 지역특화작목 관련 법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- 3. 시 · 군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 전문가
- 4.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5.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- 6. 유통·판매·수출 관련 전문가
-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8조(협회의 설립 및 운영)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특화작목발전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를 설립할수 있다.
  -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
  - ③ 협회는 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지역특화작목 조사 연구 발굴 및 개선 건의
  - 2.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제안
  - 3. 사업자의 공동 홍보·마케팅·품질관리
  - 4. 지역특화작목 관련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
  - 5.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
  - 6. 지역특화작목별 생산 및 재배기술 지원
  - 7.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발전 등을 위하여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
  - ④ 도지사는 협회의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 제9조(업무의 위탁)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실용화 촉진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  - 1. 「농촌진흥법」 제33조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
  - 2.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, 제12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, 사업화 전문회사 및 기 술평가기관
  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 법 령

### ■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

- 제5조(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심의를 거쳐 5년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, 매년 연도별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・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
  - 2.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확보 방안
  - 3.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
  - 4.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,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에 관한 사항
  - 5. 국내외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, 대학 및 기업 등과의 협력 방안
  - 6.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시설·장비 구축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  - 7.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- ③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관·법인·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

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.

- ④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광역시장 ・특별자치시장・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실천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시·도지사는 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실천계획(이하 "실천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지역특화작목 사업추진 현황
  - 2. 추진사업별 추진체계
  - 3. 연도별 사업추진계획
  - 4. 연도별 추진사업 예산
  - 5.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 및 내용
  - 6. 그 밖에 시·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
  - ③ 시·도지사는 전년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실천계획을 매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 ■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조(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) 「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
- 1. 「농촌진흥법」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
- 2.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출자한 기관 중 농림축산 식품 관련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
- 3.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등을 하는 기관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
- 제12조(발전계획의 수립 등) ① 시·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당 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(이하 "발전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거나 변경할때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  - ② 시·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계획을 통보받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발전계획을 변경했을 때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.
  - ③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  - 1.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사업의 목적과 지역특화작목의 종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추진방법을 변경하는 경우
  - 2.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력 및 시설 투자계획을 10퍼 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

## ■ 농촌진흥법

제33조(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ㆍ운영) ① 농촌진흥청장은 정

부,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 발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(이하 "실용화재단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- ② 실용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.
- ③ 실용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1.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와 알선
- 2.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조사와 연구
- 3. 영농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성과 활용 지원
- 4.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
- 5.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 업무
- 6. 농가와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
- 7. 농식품 벤처・창업 활성화 지원
- 8.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
- 9. 그 밖에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## 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

제10조(기술거래기관의 지정·취소 및 지원)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·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거래를 위한 전담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제12조(사업화 전문회사) ① 정부는 민간부문에서의 사업화를 촉 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회사(이하 "사업화 전문회사"라 한다)에 대한 육성·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- ② 정부는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하여 사업화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정부는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사업에 우선하여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.
- 제35조(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)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·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평가기관(이하 "기술평가기관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  - 1. 기술평가
  - 2. 기술평가 수요의 조사 및 분석
  - 3. 기술평가정보의 수집・분석・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
  - 4.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
  -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2호,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 - 1. 지정된 후 연간 기술평가 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수이하인 경우
  -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 - 3. 제4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 - 4.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

- 5.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
- 6.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- ④ 기술평가기관은 기업의 경영·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제1호·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술평가정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술평가정보 가 기술평가기관 간에 공유될 수 있고, 기술이전·사업화의 촉 진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기술평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-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절차,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, 제4항에 따른 통보의 범위 및 제5항에 따른 기술평가정보의 관리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# 1. 사업개요

□ 도내 지역별 특화작목의 연구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· 농촌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함

### 2. 비용 발생 요인

□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제 4조의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제5조 실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따른 사업비

#### 3. 관련조문

- □ 안 제4조(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) 제3항 제1호~3호
  - ③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  - 1. 지역특화작목 육성계획
    - 2.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 보급 및 사업화 계획
    - 3.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인력 및 시설 투자 계획
- □ 안 제5조(실천계획의 수립 및 시행) 제3항 제1호
  -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  - 1. 지역특화작목 사업 추진 현황

## 4. 비용 추계결과

- 가. 추계의 전제: 지역특화작목 실태조사비(추계기간: 2020~2024년/5년간)
  - \*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및 연구기관 시설투자비: 관련부처(농촌진흥청)에서 사업비 예타 진행 중·연구개발비: 국비(100%), ·연구기관 시설투자비: 도비 매칭(국 50 : 도 50%)
- 나. 추계 결과: 230백만원(국비) \* 세입 및 세출예산 없음
- 다. 재원조달 방안: 중앙발전협회(법인)에서 지역발전협회(법인) 지원

# 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내용	계		2차년도 (2021년)			
지역특화작목 실태조사	230	30	30	50	50	70